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1277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8. 30. 접수 제226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부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신용보증재단(소송수계 전 원고임)은 2017. 11. 10. A와 보증금액 2,550만 원, 보증기한 2022. 10.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17. 11. 10.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 11. 10. 진흥기금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A는 2019. 12. 21.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20. 4. 9. 기업은행에 24,930,6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A는 2019. 8.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3,2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8. 30. 접수 제22613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는 적극재산은 약 9,700만 원(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6,900만 원 상당의 대구 중구 D 제6, 7층 E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등) 정도였던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1억 8,700만 원(F조합 1,500만 원, G조합 8,000만 원, H 1,500만 원, 중소기업은행 4,580,630원, I카드 1,394,332원, J 4,716,336원, 대구신용보증재단 24,930,621원, 피고 32,000,000원, K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등)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A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1. 2. 15. 대구지방법원 2020하단72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고, 그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의 행사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7조 제1항), 부인권은 소의 제기 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바(제396조 제1항), 이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부인권 행사가 인정된다면 부인권 행사의 형성적 효과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하게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원상회복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는 소제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파산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절대적으로 감소되거나 다른 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4074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부인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부인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그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3개월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기업은행에게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부인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A에게 2014. 3. 3. 2,500만 원, 2015. 4. 10.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3,200만 원으로 정하여 취득하면서 종전 대여금 3,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추가로 A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서 양도한 행위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다만,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채권최고액 1,800만 원,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9. 4. 그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9. 5. 14.경 변제로 모두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성립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에 의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4, 6 내지 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없이 체결된 점, 매매대금 3,2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종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 추가로 200만 원만 부담한 점, 피고 스스로도 A에게 2014. 3. 3.경 2,500만 원, 및 2015. 4. 10. 500만 원을 빌려 준 이후 오랫동안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A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선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상북도 김천시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66.15㎡
2. 경상북도 김천시 대 269㎡
3. 경상북도 김천시 전 310㎡. 끝.

